

ESG위원회규정

제정 : 2023.05.30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ESG(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)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ESG 정책 또는 경영에 관한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, 심의
2. ESG 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
3. ESG 정책 추진 관련 주요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권고
4. 그 밖에 ESG에 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(서울), 부위원장은 부총장단(학무부총장(서울) 제외)으로 한다.
③ 위원은 교내 주요 보직자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사회공헌, 국제협력, 환경연구 등 ESG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명직 위원을 두며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장 유고에 따른 직무의 대행은 학무부총장(국제), 의무부총장, 행·재정부총장, 대외부총장 순으로 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장, 부위원장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③ 회의는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자문위원회) ① ESG 정책, DEI(Diversity·Equity·Inclusion) 실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회는 ESG 관련 경륜과 학식을 갖춘 학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,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.

제8조(산하 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환경위원회, 사회적책임위원회, 투명경영위원회 및 DEI사무국을 둔다.

- 1. 환경위원회 :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캠퍼스 운영 등 환경정책 수립·추진
 - 2. 사회적책임위원회 : 창학정신에 기반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정책 수립·추진
 - 3. 투명경영위원회 :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교육·연구정책 수립·추진
 - 4. DEI사무국 : ESG위원회 운영 지원, 학내 유관부서 ESG 정책 수행업무 지원
- ② 각 산하 위원회는 교내 유관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9조(개선 권고) 위원회는 ESG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에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 등 지원) ① 위원회 행정지원을 위해 DEI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임명직 위원과 자문위원회 위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교내에서 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